

## ◎국가유산청공고 제2024-0226호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,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6일

국가유산청장

###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

1. 공 고 명 :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

2. 예고내용

구분	지정 명칭	비고
공동체종목	한글서예	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

3. 지정사유

- ‘한글서예’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하는 무형유산임
- 한글이 창제·반포되면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음. 특히,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의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물은 민속사·국어사·음식사·문화사·서체사 분야 연구에 기여함
- 또한,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,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문자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캘리그래피를 통해 창의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
- 이처럼 한글서예는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, 학술성,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
- 해당 종목은 보편적으로 공유·향유하고 있는 유산이므로,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

4.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5. 예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6. 특기사항

-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(www.khs.go.kr) 새소식 「국가유산지정예고」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연락처 :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

- 전화번호 : 063-280-1638
- 전송번호 : 063-280-1649
- 주 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,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
- E-mail : dhkim0228@korea.kr